◉국방부고시제2020-12호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1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화천지역 군 사용 사유재산 정리사업
2. 사업의 개요

   국방·군사시설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토지 사용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산58-5 등 2필지 4,596㎡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20.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 락 처 : 02-748-4246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주 소	성 명
계(2필지)				4,596	4,596				2명		
1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산58-5	임	3,376	3,376	임야 도로	계획관리 지역	-	국방부 (지분 9분의 7)	-	-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신샘밭로 7**, 10*동 *03호 (소양강***아파트)	박** (지분 9분의 2)	-	-
2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산58-6	임	1,220	1,220	임야 도로	계획관리 지역	-	국방부 (지분 9분의 7)	-	-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신샘밭로 7**, 10*동 *03호 (소양강***아파트)	박** (지분 9분의 2)	-	-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 02-748-4246)에게,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 (☎ 02-748-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52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전기버스 2종의 차량 모델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고시의 기준을 만족함

※ 전기버스(2종) : 현대자동차㈜ 카운티일렉트릭, 자일대우상용차㈜ BS110CN

2. 주요내용

가. 전기버스 신규 등록 : 고시 제4조 제5항 제2호 및 제5호 개정

현 행	개 정(안)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⑤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3호 규정을 만족하는 전기자동차(전기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3호 규정을 만족하는 전기자동차(전기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1. (생 략)
2. 자일대우 BS110, BS110CN, FX120	2. 자일대우 BS110, BS110CN(123kWh, 249kWh), FX120
3. ~ 4. (생 략)	3. ~ 4. (생 략)
5. 현대자동차 일렉시티, 일렉시티 굴절버스 (신 설)	5. 현대자동차 일렉시티, 일렉시티 굴절버스, 카운티일렉트릭(128kWh)

※ 고시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20-90호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등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을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4조, 제1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친수구역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친수구역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에 대한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주택본부 주택정책과, 대전도시공사 도시개발팀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20년 4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1. 친수구역 지정(변경)

가. 친수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1) 명 칭(변경없음) :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2) 위 치(변경없음) :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

3) 면 적(변경)

- 기정 : 933,948㎡
- 변경 : 948,918㎡ (증 14,970㎡)

나. 친수구역의 지정(변경)일 : 관보게재일